동부건설

범어 센트레빌 입주자모집공고

센트레빌 CENTREVILLE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아파트로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에 대한 모집공고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04.1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8.03.27)이 적용되오니,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entrevil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인터넷 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이 추첨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대구시 수성구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13.) 현재 대구광역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북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하고 신청한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권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을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시행 2016. 11. 15 규칙개정시 기반영)

■ 2017. 09. 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2017. 9. 20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향후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하는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부산 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된) - 공공택지 / 부산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전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성남시 분당구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 포함)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위반에 따른 부적격당첨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정부정책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외 자세한 사항은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 1순위/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아파트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은 17:30분까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입력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 기재

※ 2009. 4. 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됩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18428(2018.04.12)호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산 128-2번지 외 5필지 ■ 대지면적 : 4,314㎡ ■ 건축물연면적 : 14,049.7630㎡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 지상 18층, 아파트 1개동, 총 88세대(조합원공급 42세대, 일반공급 45세대, 보류지 1세대) 중 일반공급 45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에 따른 조합원 세대수 및 공급면적 : 42세대, 4,466.642㎡[특별공급분 13세대(일반 특별공급 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세대)] ■ 주차대수 : 총 118대 (세대당 1.34대)

1. 공급대상 (면적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모델번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합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계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민영주택	2018000561 - 01	84.9460	84A	84.9460	21.8038	106.7498	7.7522	45.3959	159.8979		49.1346	5	0	0	0	0	0	5		2
	2018000561 - 02	84.9593	84B	84.9593	20.0177	104.9770	7.7534	45.4030	158.1334		48.3186	8	3	1	1	1	0	5		1
	2018000561 - 03	84.9029	84C	84.9029	21.5188	106.4217	7.7482	45.3729	159.5428		48.9836	16	3	1	1	1	0	13		1
	2018000561 - 04	84.9817	84D	84.9817	22.6445	107.6262	7.7554	45.4150	160.7966		49.5380	16	7	2	2	2	1	9		1
공급세대 합계												45	13	4	4	4	1	32		5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실제 세대 주거공용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합계와 총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층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에 따른 주택형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에도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증 ·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수 공급금액은 동호수별로 상이하니 정확한 세대별 공급금액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면적합신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방식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적단위 : ㎡, 원)

타입	동호수	층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소계	계약시	1회 (10%) '18. 09. 20 1차 중도금	2회 (10%) '18. 12. 20 2차 중도금	3회 (10%) '19. 05. 20 3차 중도금	4회 (10%) '19. 09. 20 4차 중도금	5회 (10%) '20. 01. 20 5차 중도금	입주지정일
84A	101동 1, 2호 라인	1층	2	313,590,000	293,410,000	607,0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242,800,000
		2층	2	323,920,000	303,080,000	627,0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250,800,000
		6 ~ 18층	1	333,220,000	311,780,000	645,0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258,000,000
84B	101동 3호 라인	1층	1	307,290,000	282,710,000	590,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236,000,000
		2층	1	316,150,000	290,850,000	607,0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242,800,000
		6 ~ 18층	6	330,210,000	303,790,000	634,0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253,600,000
84C	101동 4호 라인	1층	1	305,180,000	284,820,000	590,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236,000,000
		2층	1	313,980,000	293,020,000	607,0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242,800,000
		3층	1	324,320,000	302,680,000	627,0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250,800,000
		4 ~ 5층	2	331,560,000	309,440,000	641,0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256,400,000
		6 ~ 16층	11	332,600,000	310,400,000	643,0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257,200,000
84D	101동 5호 라인	1층	1	300,570,000	283,430,000	584,0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233,600,000
		2층	1	309,840,000	292,160,000	602,0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240,800,000
		3층	1	319,620,000	301,380,000	621,0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248,400,000
		4 ~ 5층	2	326,820,000	308,180,000	635,0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254,000,000
		6 ~ 18층	11	334,540,000	315,460,000	650,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260,00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A	84B	84C	84D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 유의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기 바랍니다.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하이브리드쿡탑, 빌트인 광파오븐렌지, 빌트인 식기세척기,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안방 붙박이장,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등)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선택 품목은 추후 공지예정이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해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 등에 따라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라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된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는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활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최하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본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분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 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방문 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특별공급은 방문신청접수만 가능)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등)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및 은행창구)시 청약자격 등의 확인(검증)없이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착오는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며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이 불가능한 것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당첨자의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어 당첨자로 발표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자격 등 기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또는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와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청약자격 중 주택소유에 관하여 확인, 확인결과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과 다르게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며, 당첨사실 계약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정날인 이 신청인 서면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본인에 의한 신청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약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을 주민등록등상 본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하는 경우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시 신청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일정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자격 및 주택규모가 달라져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주택 당첨에 대한 부적격 판정 시 당첨의 취소 또는 계약의 취소를 일방적으로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84C	84D	계
일반 특별공급(기관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대상자 등	0	1	1	2	4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0	1	1	2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0	1	1	2	4
노부모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0	0	0	1	1

※ 주택형 84A타입의 경우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없습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접수 및 당첨자 선정 일시, 장소

구분	신청일자 및 시간	당첨자 선정 일자	장 소
일반 특별공급(기관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018.04.18.(수) (10:00~14:00)	2018.04.18.(수) (17:00)	범어 센트레빌 홍보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927-3번지 5층)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노부모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당첨자 선정일자와 시간을 인지하시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야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배정하여 금융결제원 정보로 공개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 · 호수 배정 결과 발표)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 · 호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포함)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 신청방법 : 해당 청약 신청일 당시 홍보관 방문 청약신청 □ 당첨자 선정일시 및 장소 : 2018. 04. 18(수) 17:00 / 당사 홍보관(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927-3 5층)

□ 계약체결일 : 2018. 05. 08(화) ~ 2018. 05. 10(목)(3일간,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 용	
세대당 1회 한정	• 특별공급은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신청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자격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당첨자 모두 당첨이 취소되오니 유의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서 가족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제40조에 의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의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의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아래의 청약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통장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유의사항	•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특별을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해당 특별공급 부적격자 미달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주택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처벌 또는 소명을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신청자격 및 주택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사항을 검색한 결과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당첨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가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 동 · 호수는 특별공급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됨(1회 한정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일반공급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또는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미성년인 세명이상의 자녀를 둔자 일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할 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함. 최하층 우선배정 다자녀가구와 고령자 또는 장애인세대가 경쟁이 발생할경우 고령자 또는 장애인세대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음,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일반 / 다자녀가구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됨) •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 본인이 아니면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시 · 도관공서 : 보건복지과(의사상자), 시 · 도 장애인복지과(장애인), 국군복지단(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하나원(북한이탈주민), 통일부(납북피해자), 여성가족부(일본군위안부피해자), 대한체육회(우수선수),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근로자, 무역유공자), 기능인), 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유공자) 등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및 장기복무 군인의 주택청약시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대구광역시에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기타지역의 자격으로 청약함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당첨자)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세반서류를 구비하여 홍보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 · 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10년장기복무군인 등 (10년장기복무군인, 군인연금)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 : 전체 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구분	84A	84B	84C	84D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1	1	2	4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의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의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등록 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를 대구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미달시 대구광역시 1년미만, 경상북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 미계약 동 · 호 발생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자녀수(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 주민등록표등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합니다.(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사항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2018.02.26.)]"에 따릅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1조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구분	84A	84B	84C	84D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0	1	1	2	4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혼인 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 기준으로 확인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등) 제출 ※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입양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낙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관계증명서 등(원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됨,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함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구분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02,590원 이하	5,846,903원 이하	5,846,9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6,003,108원 이하	7,016,284원 이하	7,016,284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05,805원) 합산하여 산정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직계존 · 비속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하여 가구원수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산정방식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근로자 및 자영업자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표 소득금액 증명원의 소득금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으로 소득을 산정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본인)의 직계존 · 비속 포함)을 하여 산정합니다. (단,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방법	•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른 신청자의 출생신고일이나 입양신고일 기준) ② 2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대구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 2순위로 인정되니,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시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도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사업자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사업자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사업자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4.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 전체 건설량의 3% 이내 공급

구분	84A	84B	84C	84D	계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0	0	0	1	1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 을 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당첨자 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1년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홍보관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7호(2018. 02. 26.)]"에 따름

5.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일반특별공급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한 추천명단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 불가)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청약신청자 본인 접수신청 및 인적사항 기록, 홍보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청약신청자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만 19세이상 세대원)	본인/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구비 서류 (만 19세이상 세대원)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배우자	접수장소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배우자	접수장소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특별공급	○		노부모 가점표	본인	청약신청자 본인 접수 신청 및 인적사항 기록, 당사 홍보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 자녀의 무주택기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택1)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서명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이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이 필요합니다.

4 일반공급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및 세대원 중에 당첨된 자 청약 제한)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연 청약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청약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과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어 당첨자로 발표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당첨되어 당첨자로 발표된 경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취소된 경우라도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청약 신청 경우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여만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및 장기복무 군인의 주택청약시 거주요건 적용 유권해석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대구광역시에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기타지역의 자격으로 청약함

2.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1순위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 추첨제 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규정에 따른 주택형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본 아파트는 전 세대 전용면적 85㎡이하로 구성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 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이하	100%	0%
전용면적 85㎡초과	50%	50%

※ 본 아파트는 전 세대 전용면적 85㎡이하로 구성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 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 분	신청자격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등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주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되 기간 산정 기준은 만3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당첨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정당한 당첨자인 경우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검색 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는 복합건물 주택은 포함)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①과 ②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청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⑨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절 특별공급주택 외)시 적용함
부양가족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단,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5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 일반공급 청약신청 일정 및 방법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전 반드시 대구광역시 전입일 확인 요망(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상 확인 요망)

- 본 아파트는 1순위 당해지역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청약신청 접수일	청약신청방법	청약접수시 유의사항
일반공급	1순위(당해)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2018.4.19.(목) 08:00 ~ 17:30	• 인터넷 청약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당해지역(대구광역시)" 거주자는 "당해지역(대구광역시)" 접수일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 청약불가(위반시 부적격처리) - "당해지역(대구광역시)"에 전입제한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역(대구광역시)" 거주자라 하더라도 전입제한일 이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위반시 부적격처리)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의 효력상실
	1순위(기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18.4.20.(금) 08:00 ~ 17:30		
	2순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거주자	2018.4.23.(월) 08:00 ~ 17:30		

※ 홍보관 내에서는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적용안내,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복무 중인 군인 청약 1순위 신청자중 대구광역시 1년 이상(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신청시(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기타지역으로(수도권 거주자) 신청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부적격처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자(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 불가)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처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접수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등의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본인이 신청시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가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의 청약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 /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6 당첨자 발표

1.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일시 : 2018.4.18.(수) / 17:00 장소 : 범어 센트레빌 홍보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927-3번지 5층)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추첨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시 : 2018.4.27.(금) 장소 : 금융결제원 청약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및 당사 홈페이지 (https://www.centreville.co.kr)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일시 : 2018.4.27.(금) / 장소 : 홍보관 및 홈페이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 · 호수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 · 호수의 공급대금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납부하셨더라도 계약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당첨자 선정 방법(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수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개할 예정임) • 특별공급 추첨일 당사 홍보관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여 동호수 지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거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및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발표 및 동 · 호수배정 발표일시가 상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자로 판정되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 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 특별공급 당첨자는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사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발표는 지연될 수도 있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순에 관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 별로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다시 접수 하지 않음)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은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가점제 청약접수자 미달시 추첨제 청약접수자가 입주자로 선정됨)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본 아파트는 전세대 전용면적 85㎡이하로 구성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까지 가점이 높은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 미만일 경우 순위별 정당당첨자 선정이 끝난 후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홍보관에 별도 공고하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entreville.co.kr)에 공개함.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하고 신청한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3.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선 정 방 법
예비입주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의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을 초과할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 입주자 중 낙첨자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홍보관에 별도 공고하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entreville.co.kr)에 공개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주택전시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 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2일 이내에 홍보관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변동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받아서 예비입주자 공급대상에서 참여 불가, 이에 대해서 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된 자 • 호수 및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 및 게시함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되며, 추가 공급 중에서에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예비입주자는 동 · 호수 배정 추첨 전에 계약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됨)

4. 인터넷 당첨자 발표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 2018. 4. 27.(금) ~ 2018. 5. 6.(일)(10일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청약 → 당첨자사실조회 → 주택별조회
전화(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서비스코드: 9 → 1 → 3)	ARS 서비스제공 없음
휴대폰 모바일	제공대상	•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18. 4. 27.(금)(08: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 6. 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7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18. 5. 8.(화) ~ 2018. 5. 10.(목)(3 일간) 10 : 00 ~ 16 : 00	범어 센트레빌 홍보관(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927-3번지 5층)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부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사전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 사유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당사 홍보관에서 계약 체결 합니다.

2.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서류	구 비 서 류
공통	○		계약금	• 계약금 지정계좌에 입금한 입금증(홍보관 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택공급신청서	•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표 초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거주기간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만18세 이상 자녀의 미혼여부 확인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당첨사실이 부적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인감도장(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위임장(계약자)	(계약체결 장소 비치)
	○		신분증(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장(대리인)	• 본인(계약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계약체결 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참고)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세대주 성명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이름 등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 및 세대원의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의 인감증명이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은 계약체결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3. 계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을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제공하여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의 당첨사실 유무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

4.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부적격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부적격 통보자가 주택공급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르거나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 ① 같은 청약 순위(순위 없이 주택형 및 같은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나머지 세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름)

5. 분양대금 관리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DGB대구은행	505-10-199383-0	동부건설(주) / 범어현대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당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열쇠를 받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분양)계약서 할인율(선납당일)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율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7자리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01호 - '1013001' / 102동 702호 - '1020702')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대출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을 납부 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관련정부 및 금융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도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 책임을 부담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하며 입주지정일 이후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승인 여부 및 대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 보증 규정 및 보증 한도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자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면적적으로 계약면적까지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종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행위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첨부)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등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시행자, 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시행자 및 시공자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는 것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알의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첨부될 예정이며 입주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증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시기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36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시기 • 준공예정 : 2020년 02월 예정 ■ 입주예정일 : 2020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여 드리며 입주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주민카페, 주민회의소), 관리사무소, 택배보관실, 경비실, 세대공용창고, 전기 / 기계실, 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됨

옵션

□ 추가선택품목계약(발코니확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 입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계
84A	2,000,000	14,390,000	16,390,000
84B	2,000,000	14,390,000	16,390,000
84C	2,000,000	13,730,000	15,730,000
84D	2,000,000	20,110,000	22,110,000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금액	DGB대구은행	505-10-199378-1	동부건설(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함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관련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급된 세대의 일괄 확장 전체를 시공할 예정이며 일부 시공에 대한 별도계약은 체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확장 시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는 공동주택 공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이후 확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제품으로(타사제품)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형별 주택의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관 및 카탈로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창호류 등은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등)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면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세대는 확장된 세대와 다르게 공급되는 바닥, 천장, 벽체 등의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은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벽체 돌출 및 천장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종 선택품목(유상, 무상)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바닥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유사 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홍보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 입	선택 안	설치위치	금 액	비 고
전타입	ALT1	거실 + 침실1	3,410,000	LG전자
	ALT2	거실 + 침실1, 2	4,840,000	
	ALT3	거실 + 침실1, 2, 3	6,270,000	

• 천장형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에어컨을 추가 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에어컨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천장형 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제공되는 천장형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됩니다. • 실외기 설치 위치에 따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한 천장형 에어컨 위치는 변경이 불가하며, 에어컨 설치개소는 변동 없습니다. • 타입에 따라 침실이 아닌 알파룸의 경우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에어컨 설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므로 선택사항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하이브리드쿡탑 / 빌트인 광파오븐렌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적용타입	금 액	구 분	적용타입	금 액
하이브리드쿡탑 (가스1구+하이라이트2구)	전타입	418,000	광파오븐(LG전자)	전타입	594,000

• 옵션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으로 시공되며, 상기 금액은 제품 업그레이드 설치에 따른 차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 전기 및 가스 사용에 대한 개인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3)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적용타입	금 액	적용타입	금 액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84A	539,000	84C	638,000
	84B	539,000	84D	781,000

4) 안방 붙박이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적용타입	금 액	적용타입	금 액
안방 붙박이장	84A	1,947,000	84C	2,200,000
	84B	1,947,000	84D	1,947,000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DGB대구은행	505-10-199381-6	동부건설(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공급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서에서 정함 ※ 옵션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세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에서 제공되는 품목(천장형 빨래건조대, 주방가구 붙박이장, 세대별 지하창고, 홈시시템 및 스마트 환경센서)은 변경 혹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이 상기 발코니 확장 대금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을 사업주체가 별도로 제시하여 계약자가 선택하여 공급계약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별도계약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일정 시점 이후 공사를 위해 자재를 발주하므로 계약 후 해지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표기 (침실1, 2등)는 설계도서 기준이며, 설계도서 변경 등 유상옵션의 사양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홍보관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옵션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 · 바닥재 · 타일 · 창호 · 가구 · 주방용구 ·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에서 사업주체와 선택 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 종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제도를 시행하고 입주자 선정결과 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및 식당, 현관(타일, 강화대리석), 침실(강마루), 발코니(타일),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바닥난방, 발코니 바닥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장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주방타일, 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처리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콘센트, 스위치	배관, 배선
욕실	타일(바닥, 벽), 천장, 석재(강화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문,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 통신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상 ·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쿡탑, 후드 등의 주방 빌트인 가전제품류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 설치관련), 전기 · 통신 배관 / 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창호	창호(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장,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 발코니 도어, 대피공간 도어, 실외기실 도어
가구류 및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가구 등 가구류 일체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별	84A	84B	84C	84D
마이너스 옵션금액(원)	13,790,700	13,790,700	13,790,700	13,790,700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금액 총액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신 세대의 발코니는 비확장형으로 공급되므로 청약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확장 및 유무상 옵션을 선택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공사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일부 · 세부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마이너스옵션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부분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에 따른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입주자의 공사기간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사업주체가 정한 최초 입주가능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이후 입주자가 공사 착수하여 공사기간 동안 공용부에 인테리어 관리 · 감독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추가계약 또는 자재 발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천 5백만원 이상 시 사업주체 책임이 아닌 입주자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에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하여 발생한 하자 또는 인과관계 입증에 책임이 없고 분쟁 사항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 중 이하 마감재에 대한 마감은 본 사업주체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 (이하 세부 유의사항은 공급계약서 및 홍보관 안내에 따름) • 마이너스 옵션은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시공상의 문제로 설치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별도 동 · 호수에 대한 해당 세대에 시공 되지 않을 수 있으며 ... 세대 마감 후 입주자가 이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세대내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되어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해 그 책임을 규명하며 그 결과 입주자의 과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ICT서비스

■ 세대 3년간 무상제공 ICT서비스

구분	항목	무상제공기간	무상제공 종료 이후
세대 내	KT 인공지능 TV GiGA Genie2 단말	기본제공	-
	인공지능 홈서비스	3년	계속 이용 시, 세대별 별도 청약 필요

※ 홍보관 내 전시된 기가지니2 홍보 동영상은 방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실제 적용되는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케이티에서 제공하는 항목으로 추후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내 전시된 기가지니2 서비스 중 일부는 KT인터넷 전화, 올레TV, 지니뮤직 등의 상품(유료) 이용자만 사용가능합니다. ※ 홍보관 내 전시된 기가지니2 서비스 중 홈 IoT가전 서비스는 IoT전용 가전에만 이용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적용되는 품목이며, 발코니 비확장시 기가지니2 서비스 단말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 구매/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인공지능 홈서비스 유의사항

• 인공지능 홈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이 필요합니다. • 범어 센트레빌에 제공되는 기가지니2 단말은 입주시 제공되는 품목으로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기가지니 단말기의 색깔은 임의 배정됩니다. • 인공지능 홈서비스는 기가지니와 홈네트워크 연동 서비스로 3년간만 무상 제공되며, 계속 이용 시 서비스료가 발생하며 세대별 별도 청약을 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홈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패드(Wall-Pad)의 메뉴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기능 및 서비스의 종류는 입주 시 가능한 기술로 적용됩니다. • 인공지능 홈서비스는 유 또는 무선 네트워크 하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 타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KT IPTV 연동은 불가능하며 국내 최고 인터넷 이용 및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타사 IPTV를 사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홈서비스의 TV 채널 변경과 음량조절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위 ICT 서비스는 추후 브랜드명 또는 서비스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해당 ICT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 조건은 ㈜케이티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인근에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되어 인접 세대에 따라 조망이 일부 제한되거나 발코니 외부 미확장 세대와 관계없이 실외기실 등 일부 입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 계약 이후 ... (이하 8. 유의사항 세부 내용)

• 단지 내 조경, 경관조명, 외부 색채, 단지 배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 조감도, 카탈로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내 전시품 및 연출품은 분양 시기와 실제 공급시점이 상이하여 색상,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세대 간 조망, 일조,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의 세부 내용은 공급계약서 및 홍보관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건사항

• 학교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현재 경동초 학생배치 시설 부족으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고, 중 · 고등학교는 2학교군(중) 및 단일학군 또는 일반학군(고)에 분산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관할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외관 디자인, 외벽 및 CI/BI 색채(배경포함)는 채광으로 인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마감 등)는 개략적 개념 표기 및 입주자 이해를 돕기 위해 추후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의 위치 및 규모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출입구, 지하주차장 등의 위치 및 배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사항의 세부 내용은 홍보관 및 공급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홍보관 및 각종 홍보물은 2018년 03월 02일 사업계획 승인변경(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공간의 일부가 ... (설계관련 주요사항 세부 내용은 홍보관 비치 자료 및 공급계약서에 따름) • 세대 내부 평면 구조, 마감재, 가구 배치 등은 홍보관 모형과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장치,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위치 및 크기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주방, 발코니 등의 바닥 단차 및 배수구 위치는 설계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계단실, 복도 등 공용부 마감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KS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 제품 설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라목)	○	산업통상자원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 2, 별표2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1호 가목 준수, 변압기는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역률개선용콘덴서 전동기별로 설치, 간선 전압강하는 내선 규정 따름
	조명설치(다목)	○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침실, 거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세대 내에 각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VAT포함)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건축	278,128,710	
전기, 소방, 정보통신	유원이엔에프 주식회사	129,800,000	

분양보증

■ 분양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일금 일백칠십사억팔천이백만원정 ₩17,488,200,000원	제 01282018-101-0004200호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범위, 보증채무 대상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관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약정한 입주지연,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금 납부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에 따라 부담하는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이후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금 납부 일정보다 앞당겨 받은 입주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아닌 자가 납부한 입주금 14.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직접 납부한 입주금 15. 보증채권자가 대물변제 받은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의 친인척이 보증채권자인 경우 그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 대표자 등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의 입주금을 대여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채권자가 제6조 제1항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범어현대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동부건설(주)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85안길 28(범어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법인등록번호	170171-0022595	110111-0005002

■ 분양홈페이지 : www.centreville.co.kr ■ 홍보관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927-3번지 5층

분양문의 **1599-9872**

시행 범어현대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시공 동부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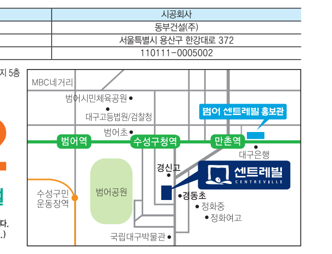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홍보관 및 당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